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8년 7월 9일(월) 17:00-18:20
- 개최장소 : 여의도 켄싱턴호텔 소호실 4번룸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박성경 이사, 정재철 이사, 윤형주 이사, 배극수 이사, 손병덕 이사, 원치윤 이사
이상 6명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개회선언

▶ 박성경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임시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의안>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의 건

- ▶ 박성경 이사장 : 제 1호 의안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이랜드복지재단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재철 이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정재철 이사 : 자료집 3페이지 별첨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과 산하시설(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은 2018.5.17.~5.18.에 서울시의 특별지도감독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별첨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윤형주 이사 : 정영일 국장님, 이런 특별점검을 받게 된 원인과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 ▶ 정영일 국장 : 네 이사님, 이랜드인큐베이팅 사업은 현재 이랜드재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시설 직원들이 법인에 와서 테스크포스팅 형태로 일을 하였으며 또 이 직원들은 이랜드복지재단이나 산하시설 업무가 아닌 이랜드재단 업무를 진행함으로 인해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인사 행정 조치를 취하고 예산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산하시설 전출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집행된 예산을 이랜드재단으로부터 환수하고 산하시설 소속직원은 산하시설이나 이랜드재단으로 정확한 인사발령을 하고 이랜드복지재단과 이랜드재단의 겹치고 있는 법인 직원도 정리하여 완전히 두 기관을 분리 운영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 윤형주 이사 : 예전부터 두 기관 분리 운영은 이사회에서 자주 권고 했던 사항이었지 않았습니까?
- ▶ 이천화 감사 : 산하시설 직원이 이랜드재단에서 근무를 했으니 그 예산을 이랜드복지재단으로 반환하

면 산하시설 전출금으로 다시 집행되는 것인가요?

▶ 정영일 국장 : 네 감사님, 산하시설의 추가 TO로 추가 법인전출금을 산하시설에 집행하여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랜드재단에서 환수하여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정재철 이사 : 법인에서 시설 수탁 시 약정한 법인전출금은 정확히 집행하였고 추가 법인전출금을 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이천화 감사 : 그럼 추가전출금으로 산하시설 직원을 이랜드재단 업무를 맡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정영일 국장 : 그것은 예전에 산하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삼고 이랜드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큐베이팅 직원을 산하시설에 한명씩 배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인큐베이팅 사업이 이랜드복지재단 사업이었고 이후 이랜드복지재단과 이랜드재단의 사업을 재조정하면서 이랜드재단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인원 및 조직도 함께 정리를 했어야 하나, 사업만 조정하고 인원에 대한 조직은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윤형주 이사 :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윤형주 이사님이 동의해주셨는데요, 재청하십니까?

▶ 배극수 이사 : 본 건에 대하여 동의재청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 동의와 재청하셨기에 본 건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보고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안이 결의 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그럼 다음으로는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입니다. 이랜드복지재단의 정관 중 일부내용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재철 이사가 설명하

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철 이사 : 7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7조,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인 정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정 및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랜드복지재단의 정관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바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연번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1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지원 사업 -노인복지법 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법 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노인복지법 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재가노인지원) 운영
2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3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이사 7인 이상(이사장 포함)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4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화 감사 : 5번의 정관 제35조 변경과 관련하여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손병덕 이사 :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님과 의견이 동일하며 이렇게 변경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가 전제 조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검토한 후 정관 35조 변경에 대해 이사회에서 재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치윤 이사 :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손병덕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윤형주 이사 : 저도 5번의 35조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여러 부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이사회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일단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동의재청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그럼 1번 제4조 (사업의 종류), 2번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3번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4번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는 원안대로 정관 개정함을 승인하고 5번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검토한 후 정관 변경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할 것을 이사님들께서 동의 및 동의재청 해 주셨습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제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 의안은 제4조 (사업의 종류),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는 원안대로 정관 개정함을 승인 하되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검토한 후 정관 변경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할 것으로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이 결의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관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가 추후 재논의 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그럼 다음으로는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입니다. 이랜드복지재단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인 운영규정’ 내용 중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인 운영규정 개정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재철 이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철 이사 : 19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법인 정관 제31조에 따라 우리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인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운영규정 내용 중 일부 개정함이 필요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복지재단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배극수 이사 : 본 건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배극수 이사님이 동의해주셨는데요, 재청하십니까?

▶ 원치윤 이사 : 본 건에 대하여 동의재청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 동의와 재청하셨기에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법인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안이 결의 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제 4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다음은 제4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입니다.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재철 이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정재철 이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우리법인 산하시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가 있어 53페이지 별첨 자료와 같이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외 11개 시설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추경 사유로는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전입금, 잡수입 등 수입의 증가와 이월금확정으로 인한 수입 감소, 당초 후원금 규모에서 실 후원금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후원금이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금액	기관명	금액
서울특별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4,627,854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429,290
시립강동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426,812	서구노인종합복지관	4,468,900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755,102	서구노인복지센터	138,596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3,864,449	하당노인복지관	2,947,713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중랑데이케어센터	343,906	이랜드하당재가센터	112,592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3,426,000	강북데이케어센터	544,894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손병덕 이사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법인 산하시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손병덕 이사님이 동의해주셨는데요, 재청하십니까?

▶ 윤형주 이사 : 본 건에 대하여 동의재청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 동의와 재청하셨기에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결의 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제 5 호 의안>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 심의

▶ 박성경 이사장 : 다음은 제5호 의안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 심의' 건입니다.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재철 이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정재철 이사 : 이랜드복지재단은 2014년 2월부터 봉화군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관리자들의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2017년 9월 15일 임시이사회 당시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 심의 건」을 의결하고 「위수탁 해지요청」공문을 두 차례(2017. 9월과 2017. 11월)에 걸쳐 봉화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봉화군 역시 두 차례(2017. 10월과 2018년 7월)에 걸쳐 우리재단에 「봉화군노인복지관 지속운영 협조요청」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이 향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봉화지역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봉화노인복지관의 수탁운영 기간은 2018.1~2021. 12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봉화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이랜드복지재단이 수탁운영 계약 종료 시까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본 건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덕 이사 : 이번의 결정은 아주 감사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남에서 산하 복지관을 잘 운영하여 지역사회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이랜드가 포기하지 않고 섬김으로 인해 향후 영남지역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형주 이사 : 그럼 처음에 해지하기로 한 원인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정재철 이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해결 된 부분은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윤형주 이사 :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겠지만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손병덕 이사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손병덕 이사님이 동의해주셨는데요, 재청하십니까?

▶ 윤형주 이사 : 본 건에 대하여 동의재청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 동의와 재청하셨기에 본 건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 심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제5호 의안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종료결정 취소 심의’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다른 의견이나 안건이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 박성경 이사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시이사회의 안건이 모두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 감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8시 20분

2018년 7월 9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박 성 경 (인)

이 사 정 재 철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배 극 수 (인)

이 사 손 병 덕



이 사 원 치 윤



감 사 이 천 화

